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7833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12

제안자 : 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 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과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34호)	박남춘	2016.5.30.	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16.11.21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39호)	노웅래	2016.5.30.	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16.11.21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119호)	박주선	2016.6.7.	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16.11.21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5호)	김삼화	2016.6.14.	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16.11.21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1529호)	이용득	2016.8.10.	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16.11.21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호)	이정미	2016.9.7.	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16.11.21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3332호)	신상진	2016.11.7.	제349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17.2.13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4111호)	이훈	2016.12.5.	제349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17.2.13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8572호)	양승조	2017.8.17.	제354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전체회의(2017.11.13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8855호)	위성곤	2017.8.30.	제354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전체회의(2017.11.13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9175호)	이연주	2017.9.7.	제354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전체회의(2017.11.13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13270호)	박정	2018.4.26.	제363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회의(2018.8.28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13866호)	신보라	2018.5.31.	제364회 국회(정기회) 제11차 전체회의(2018.11.22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14797호)	김광수	2018.8.7.	제364회 국회(정기회) 제11차 전체회의(2018.11.22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

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15954호)	어기구	2018.10.11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18.12.18.자로 직접 회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2017년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한 공공기관등이 79.4%에 불과하여 64개의 공공기관 및 21개의 지방공기업이 그 의무를 미이행하였음.

이에 공공기관 등이 법정 의무인 청년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에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6항 신설).

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%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 법 및 청년고용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

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,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5조제6항 신설).
- 나. 이 법 및 법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함(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,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(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항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으로 한다.

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(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) ① ~ ⑤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,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 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</p> <p>② (유효기간)이 법은 <u>2018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>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</p> <p>② (유효기간)----- <u>2023년 12월 31일</u>-----.</p>
<p>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5조의 개정규정은 <u>2018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>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1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